

당헌 개정안 공고

제18차 당무위원회의(2022.08.19.)에서 당헌 개정안을 발의하였기에 당헌 제108조(당헌 개정안 공고와 의결)에 따라, 아래와 같이 공고함

< 아 래 >

□ 당헌 개정안 주요 내용

○ [제1장 총칙]

- 제2조(목적) : 강령 전문의 개정에 맞춰 당헌 총칙(제2조 목적) 수정

○ [제2장 당원]

- 제5조(구분) : 정당가입 연령이 16세로 하향(정당법 개정)되어 예비당원제 폐지

○ [제3장 권리당원 전원투표(신설)]

- 제14조의2(권리당원 전원투표) :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 신설

○ [제4장 대의기관]

- 제20조(권한) : 1) 당원투표 안건 부의 권한 신설 2)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근거조항 신설 3) 권한 위임의 원칙 수립
- 제21조(소집) :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권한을 중앙위원회로 명시

○ [제5장 집행기관]

- 제32조(전국위원회) : 소상공인상설특위를 전국위원회로 위상 격상
- 제33조(상설위원회) : 1) 인재영입위원회를 인재위원회로 재편하고 상설기구화 2)탄소중립특위를 상설위원회로 격상 3) 미래전환K뉴딜위원회는 삭제

○ [제8장 지방조직]

- 제59조(독립성 강화) : 시·도당 자치규칙의 근거 마련
- 제59조의2(시·도당위원장연석회의) : 시·도당위원장연석회의 조항 신설
- 제65조(권한) : 시·도당 자치규칙 제·개정 근거 마련
- 제67조(위원장) : 시도당위원장 권위 시 당무 운영권한 명확화
- 제69조(운영위원회 권한) : 시·도당 자치규칙 제·개정 발의 근거 마련
- 제74조(지역위원장) :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의 권한 정립

○ [제9장 윤리심판원]

- 제80조(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) :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적용

○ [제11장 선거관리]

- 제83조(선거관리위원회) : 정부선관위 위탁 의결 권한 조정

○ [제12장 공직선거]

- 제87조의2(전략공천관리위원회) : 공천기구의 구성방법 조항을 제2절로 모음
- 제87조의3(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) : 공천기구의 구성방법 조항을 제2절로 모음
- 제99조(가산기준) : 1) 경증장애인에 대해 경선 가산 최대 10% 부여 2)정치신인이 아닌 자에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포함
- 제100조(감산기준) : 탈당경력자 기준 및 경선 불복 경력자 기준 정비

○ [제16장 당헌 개정 등]

- 제112조의2(시행세칙 및 자치규칙) : 시·도당 자치규칙 수정 근거 마련
- 제112조의3(비상대책위원회) :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절차의 정당성 확보

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

